

## 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신촌동 179-5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지하 2층 ~ 지상 최고 15층, 6개동, 공공분양주택 320세대(전 세대 전용면적 59㎡)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LH 청약플러스

사이버 주택전시관

■ 엘리프 성남신촌은 분양상담전화(031-896-660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프 성남신촌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각각 중복 청약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전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단, 부부가 각각 민간 사전청약+공공 분양 청약 당첨 시 민간 사전청약만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3.2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14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엘리프 성남신촌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엘리프성남신촌.com)으로 운영되며, 아래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실물 주택전시관 관람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주택전시관(주택전시관 방문 일정'에 한함)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www.엘리프성남신촌.com) 등을 통해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실물 견본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문의전화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2024.04.12(금) ~ 04.14(일), 3일간 (운영시간 : 10:00 ~ 17:00)	일반고객(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주택전시관 관람 및 분양상담	031-896-6600
서류접수기간 (대상자(당첨자) 한정)	2024.05.17(금) ~ 05.20(월), 4일간 (운영시간 : 10:00 ~ 17:00)	정당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및 상담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기간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59A, 59B 타입만 해당)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상기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이 불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www.엘리프성남신촌.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내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59A형, 59B형이 설치되었으며, 그 외 타입은 엘리프 성남신촌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단위세대(견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주택전시관(www.엘리프성남신촌.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속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계룡건설산업의 '엘리프'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엘리프 성남신촌」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우선공급 (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혼부부 (혼인기간 내)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백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어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 신청자의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9~10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5조에 의거 성남시 1년 이상(23.03.29. 이전)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성남시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3.03.29.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3.03.29.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무가 5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어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접수기간 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4년)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사전청약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			
03.29.(금)	04.22.(월) (10:00~17:00)	04.23.(화) (10:00~17:00)	04.24.(수) 10:00 ~ 04.25.(목) 17:00	05.16.(목) (10:00)	05.17.(금)~05.20.(월) (10:00~17:00)	06.24.(월)~06.28.(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RS(1661-7700)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방문 접수)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엘리프성남신촌.com) 안내 예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어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의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증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서류접수기간 내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내역·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신촌동 179-5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지하 2층 ~ 지상 최고 15층, 6개동, 공공분양주택 320세대(전 세대 전용면적 59㎡)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대상(공공분양주택)

[단위 : ㎡ / 세대]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A2	059.0000O	59A	59.07	23.4245	82.4945	47.5795	130.0740	46.5678	56	262	6	6	8	3	11	3	6	15	15	1	26.05	
		59B	59.94	23.7695	83.7095	48.2803	131.9898	47.2537											131	15		7
		59C	59.85	23.7339	83.5839	48.2078	131.7917	47.1828											54	15		2
		59D	59.51	23.5990	83.1090	47.9339	131.0429	46.9147											28	15		1
		59E	59.93	23.7656	83.6956	48.2723	131.9679	47.2458											51	15		2
합 계								320	262	6	6	8	3	11	3	6	15	15	13			

- ※ 입주예정 시기는 2026년 05월이며,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주택전시관(www.엘리프성남신촌.com)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59B타입 중 201동 102호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형태로 계획되나, 설계개요 산출 상 오차보정으로 인해 세대별 대지비분과 대지비가 일부 상이합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전이부)라멘구조(단,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계룡건설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이수건설(주), 동성건설(주), ㈜신흥디앤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사업명 : 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입니다.

###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중도금(60%)						잔금(30%)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30%)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4.08.26)	(‘24.11.25)	(‘25.03.25)	(‘25.07.25)	(‘25.10.27)	(‘26.01.26)			입주 시
059.00000	59A	56	1층	1	733,500	73,350	73,350	73,350	73,350	73,350	73,350	73,350	165,050	55,000	
			2층	4	749,300	74,930	74,930	74,930	74,930	74,930	74,930	74,930	74,930	169,790	55,000
			3층	5	765,100	76,510	76,510	76,510	76,510	76,510	76,510	76,510	76,510	174,530	55,000
			4층	5	780,900	78,090	78,090	78,090	78,090	78,090	78,090	78,090	78,090	179,270	55,000
			5층 이상	41	788,700	78,870	78,870	78,870	78,870	78,870	78,870	78,870	78,870	181,610	55,000
	59B	131	1층	7	729,300	72,930	72,930	72,930	72,930	72,930	72,930	72,930	72,930	163,790	55,000
			2층	10	745,000	74,500	74,500	74,500	74,500	74,500	74,500	74,500	74,500	168,500	55,000
			3층	10	760,700	76,070	76,070	76,070	76,070	76,070	76,070	76,070	76,070	173,210	55,000
			4층	10	776,400	77,640	77,640	77,640	77,640	77,640	77,640	77,640	77,640	177,920	55,000
			5층 이상	94	784,200	78,420	78,420	78,420	78,420	78,420	78,420	78,420	78,420	180,260	55,000
	59C	54	1층	2	691,100	69,110	69,110	69,110	69,110	69,110	69,110	69,110	69,110	152,330	55,000
			2층	3	706,0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156,800	55,000
			3층	4	720,800	72,080	72,080	72,080	72,080	72,080	72,080	72,080	72,080	161,240	55,000
			4층	4	735,70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165,710	55,000
			5층 이상	41	743,100	74,310	74,310	74,310	74,310	74,310	74,310	74,310	74,310	167,930	55,000
	59D	28	1층	1	731,600	73,160	73,160	73,160	73,160	73,160	73,160	73,160	73,160	164,480	55,000
			2층	2	747,200	74,720	74,720	74,720	74,720	74,720	74,720	74,720	74,720	169,160	55,000
			3층	2	763,000	76,300	76,300	76,300	76,300	76,300	76,300	76,300	76,300	173,900	55,000
			4층	2	778,700	77,870	77,870	77,870	77,870	77,870	77,870	77,870	77,870	178,610	55,000
			5층 이상	21	786,600	78,660	78,660	78,660	78,660	78,660	78,660	78,660	78,660	180,980	55,000
59E	51	1층	2	721,90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161,570	55,000	
		2층	3	737,300	73,730	73,730	73,730	73,730	73,730	73,730	73,730	73,730	166,190	55,000	
		3층	4	752,800	75,280	75,280	75,280	75,280	75,280	75,280	75,280	75,280	170,840	55,000	
		4층	4	768,400	76,840	76,840	76,840	76,840	76,840	76,840	76,840	76,840	175,520	55,000	
		5층 이상	38	776,100	77,610	77,610	77,610	77,610	77,610	77,610	77,610	77,610	177,830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타입(구조)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주택전시관(www.엘리프성남신촌.com)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외의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원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출납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계약 및 전매 시 필요한 인치세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전시관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201동 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1홍길동" 기재)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세대별 해당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불인정)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주예정일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6.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해당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보증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대출이자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범위(60%)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보증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이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7.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8.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

## II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1.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 시)	(입주 시)
59A	8,330,000	833,000	7,497,000
59B	8,060,000	806,000	7,254,000
59C	6,880,000	688,000	6,192,000
59D	7,990,000	799,000	7,191,000
59E	6,450,000	645,000	5,805,000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2.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설치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체결기간 내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 예정이며, 변경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또는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별 정확한 내용은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타입	제조사	모델명	설치위치	합계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 시)
1	현관중문(3연동)	전 타입	국영지앤엠	3연동 중문	현관	1,300,000	130,000	1,170,000
2	거실아트월 스타일업	전 타입	세종통상	세라믹타일	거실	3,400,000	340,000	3,060,000
3	벽 스타일업	59A	계룡OEM/ 아시아홈테크	벽체시트판넬+하든도어+고급형 도어레버	거실+주방+복도	4,800,000	480,000	4,320,000

구분	품목	타입	제조사	모델명	설치위치	합계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 시)		
		59B			거실+주방+복도	5,200,000	520,000	4,680,000		
		59C			거실+주방+복도	4,600,000	460,000	4,140,000		
		59D			거실+주방+복도	4,700,000	470,000	4,230,000		
		59E			거실+주방+복도	4,800,000	480,000	4,320,000		
4-1	바닥 스타일업_타일	59A	세종통상	자기질타일(600x600)	거실+주방+복도	2,650,000	265,000	2,385,000		
		59B			거실+주방+복도	2,800,000	280,000	2,520,000		
		59C			거실+주방+복도	2,950,000	295,000	2,655,000		
		59D			거실+주방+복도	2,650,000	265,000	2,385,000		
		59E			거실+주방+복도	2,800,000	280,000	2,520,000		
4-2	바닥스타일업_6.0T룸카펫	전 타입	LX하우시스	BS93871 모던오크색상	거실+침실+복도 등	1,450,000	145,000	1,305,000		
5	주방 스타일업	59A	계룡OEM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LX하우시스_FL103) +사각싱크볼(리빙किनSWLQ-840) +컵세척기(TIP) +전동무선충전콘센트(BIP-201W)	주방	2,300,000	230,000	2,070,000		
		59B			주방	2,250,000	225,000	2,025,000		
		59C			주방	2,600,000	260,000	2,340,000		
		59D			주방	2,300,000	230,000	2,070,000		
		59E			주방	2,900,000	290,000	2,610,000		
6	조명 스타일업	59A	계룡OEM	아트월 직부등, 거실 직부등, 주방라인등, 식탁등	거실+주방	2,000,000	200,000	1,800,000		
		59B			거실+주방	2,000,000	200,000	1,800,000		
		59C			거실+주방	2,350,000	235,000	2,115,000		
		59D			거실+주방	2,000,000	200,000	1,800,000		
		59E			거실+주방	2,000,000	200,000	1,800,000		
7	침실3 붙박이장	전 타입	계룡OEM	의류청정관리기 내장형 붙박이장	침실3	2,000,000	200,000	1,800,000		
8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수납가구	59A	LG	-냉장:BC4S1AA1 (베이지/베이지/베이지)  -김치:BC3K1AA1 (베이지/베이지/베이지)	주방	7,000,000	700,000	6,300,000		
		59B			주방	7,500,000	750,000	6,750,000		
		59C			주방	7,500,000	750,000	6,750,000		
		59D			주방	7,000,000	700,000	6,300,000		
		59E			주방	7,500,000	750,000	6,750,000		
9	인덕션(3구)	전 타입	LG	BEI3GQTBI	주방	1,400,000	140,000	1,260,000		
	하이브리드쿡탑(3구)	전 타입	헬러	EH-3120 S	주방	1,890,000	189,000	1,701,000		
10	LG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전 타입	LG	W20ERZM (네이처클레이브라운+네이처베이지)	다용도실	3,950,000	395,000	3,555,000		
11	스마트복합환풍기	전 타입	힘펠	FHD-P150S1	공용욕실	550,000	55,000	495,000		
					부부욕실	550,000	55,000	495,000		
12	시스템에어컨	59A	LG	기본(2대) 전실(4대)	거실/주방+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거실/주방+침실1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200,000	720,000	6,480,000		
		59B			LG	기본(2대) 전실(4대)	거실/주방+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거실/주방+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59C	LG	기본(2대) 전실(4대)	거실/주방+침실1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거실/주방+침실1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13			미세먼지안전복합창	59A	원가드	거실/주방 미세망적용 (나머지 안전방충망)	거실+주방+침실	3,150,000	315,000	2,835,000
				59B			거실+주방+침실	2,950,000	295,000	2,655,000
				59C			거실+침실	2,600,000	260,000	2,340,000
				59D			거실+주방+침실	3,150,000	315,000	2,835,000
	59E	거실+침실		2,600,000			260,000	2,340,000		
14	열차단필름	59A 기본	후퍼오틱	거실, 침실2, 침실3 전체실(분합창 / 터닝도어 제외)	거실+침실	1,400,000	140,000	1,260,000		
		59A 전실			전체실	2,200,000	220,000	1,980,000		
		59B 기본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침실	1,400,000	140,000	1,260,000	
		59B 전실			전체실(분합창 / 터닝도어 제외)	전체실	2,100,000	210,000	1,890,000	
		59C 기본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침실	1,400,000	140,000	1,260,000	
		59C 전실			전체실(분합창 / 터닝도어 제외)	전체실	2,100,000	210,000	1,890,000	
		59D 기본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침실	1,400,000	140,000	1,260,000	
		59D 전실			전체실(분합창 / 터닝도어 제외)	전체실	2,200,000	220,000	1,980,000	
		59E 기본			거실, 침실2, 침실3	거실+침실	1,400,000	140,000	1,260,000	
		59E 전실			전체실(분합창 / 터닝도어 제외)	전체실	2,150,000	215,000	1,935,000	
		15			무기질도료	59A	SEF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벽체/천장)	침실+드레스룸_ (벽체/천정)	2,900,000
59B	침실+드레스룸_ (벽체/천정)		2,800,000	280,000		2,520,000				
59C	침실+드레스룸_ (벽체/천정)		2,800,000	280,000		2,520,000				
59D	침실+드레스룸_ (벽체/천정)		2,900,000	290,000		2,610,000				
59E	침실+드레스룸_ (벽체/천정)		2,750,000	275,000		2,475,000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사전에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포합,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통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침실1 이중창),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거실아트월 스타일업(세라믹타일) 옵션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바닥타일 및 복도 거실 시트판넬(관련 옵션 선택 시)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 바닥스타일업\_6.0T룸카펫은 동시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선택 시 자기질타일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스타일업\_6.0T룸카펫 옵션은 전 타입 동일한 디자인 및 제품사양으로 적용되며,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장 바닥 및 시스템가구 바닥에 시공되어 각종 가전 및 시스템가구 등 설치 시 눌림자국 등이 생기며, 룸카펫 시공 시 강마루 대비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있으나 완벽한 차단은 안되어 층간소음이 하부에 전달되오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샘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강마루, 자기질타일, 6.0T룸카펫)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거실 및 복도 부위에 시트알판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디자인 줄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는 일반목문과 디테일 및 시공방법 디자인 등이 상이하하며, 일반 손잡이와 다른 디자인 손잡이가 적용되며, 계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설치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 경첩 자체에 손끼임방지 기능이 포함되며, 별도의 손끼임방지장치는 추가 설치되지 않으며, 무리하게 경첩부위에 손을 넣을 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벽 스타일업 선택 시 거실벽과 동일선에서 히든도어가 설치되며, 미선택 시 일반 도어는 거실벽보다 침실1층으로 들어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는 전기식(가스식 미설치)으로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발코니에서 주방까지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해당 공급금액은 가스배관 미설치 감소비용과 인덕션 추가 증가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시타워(건조기 및 세탁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에 따라 터닝도어와 도어개폐가 간섭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세탁기 및 건조기 병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 침실3 붙박이장 설치 시 내부에 의류청정관리기가 설치되며, 전원 배선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망이 시공되며, 거실 및 주방(단, 59C, E타입의 경우 주방 제외)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추가된 복합창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등에 따라 디자인 및 제품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옵션 선택 시 지정된 색상 및 디자인만 선택 가능하오니,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열차단필름은 전체실 선택 시 외창 기준으로 시공되며, 침실1(안방) 분합창/터닝도어 부분은 미시공되며, 부분 옵션 선택 시 거실 외창, 침실2, 침실3 외창에 시공됩니다.
- 무기질도료는 세대 내부 벽체에 시공 후 도배지 및 기타마감재가 시공되며, 입주 시 노출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5.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가 각각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전시관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201동 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1홍길동" 기재)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강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전동식 빨래건조대	경량천장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엔지니어드스톤, 비상호출(입주 시 제공)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센서형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주방TV(입주 시 제공)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및 기구, 세대단말기(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가스배관

마이너스 옵션 =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59A	59B	59C	59D	59E
금액	26,097,130	26,613,770	26,441,760	26,291,530	26,816,800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59A	59B	59C	59D	59E
금액	3,763,100	4,056,800	2,894,100	3,421,000	2,449,700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부 PL창호가 설치되며 마이너스 옵션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인허가도서(비확장)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디지털도어록은 직접 선택시공 시 세대단말기(월패드)와의 통신프로토콜 연동 문제 등으로 세대단말기를 통한 문열림 기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III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성남시내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게 공급합니다.(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00%	· 공고일 현재 <b>성남시 1년 이상</b>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23.03.29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3.03.29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수도권(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동일순차)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 및 주민등록표초본상 거주기간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턴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 또한 출입국기록 증명 필요)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동일순위(동일순차)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b>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b> 우선 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3.03.29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23.03.29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b>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b>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 및 주민등록표초본상 거주기간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턴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 또한 출입국기록 증명 필요)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05.16. 예정)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예비 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아래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적용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①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있는 경우	237,050천원 이하 (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0천원)	40,780천원 이하 (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0천원 이하)
② ①의 가구 중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58,600천원 이하	44,490천원 이하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15,500천원 이하	37,08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신혼 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56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아래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원	7,423,620원	7,897,564원	8,606,954원	9,316,344원	10,025,73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5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원	14,022,394원	14,917,621원	16,257,579원	17,597,538원	18,937,49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원	17,321,781원	18,427,649원	20,082,892원	21,738,135원	23,393,378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원	18,146,627원	19,305,156원	21,039,220원	22,773,285원	24,507,349원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 노부모·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V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3.29)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성남시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03.29)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04.22(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 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타입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 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성남신촌	A2	59	059.0000O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점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 시 당첨자발표일(2024.05.16(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05.17~05.20)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 시 제출서류 :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사전청약 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전매제한 및 거주무무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되며, 거주무무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무무 개시일은 거주무무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정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무무 관련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신청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경기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경기도(장애인), 성남시(철거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04.23)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낙점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낙점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해당없음	0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당첨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20%</b>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3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20%</b>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20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단,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00%</b>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2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생애최초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30%</b>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4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30%</b>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20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녀(태아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수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00%</b>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2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혼부부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30%</b>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4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30%</b>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200%</b>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단, 혼인기간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중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맞벌이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명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잔여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56원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단,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맞벌이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8.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b>100%</b>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b>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b> )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Ⅲ.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잔여공급(2순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우선공급)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잔여공급 포함 대상)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으로 성남시(1년 이상 계속 거주),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점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V	<b>신청시 확인사항</b>
---	-----------------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주택에 의해 당첨자발표일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전매 제한, 거주무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4.05.1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영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거주무**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에게 거주무가 부여됩니다. 거주무 개시일은 거주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무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단,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거주무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무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에는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 본인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본 아파트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 아파트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6.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www.엘리프성남신촌.com)에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VI

### 신청일정·장소·방법,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사전청약 당첨자		2024.04.22(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4.04.23(화) (10:00 ~ 17:00)		
일반공급	•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2024.04.24.(수) 10:00 ~ 04.25.(목) 17:00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전시관 현장접수 불가

## 2. 신청 시 유의사항

-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으로 동호배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청약신청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접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청약대행접수 및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공급유형(사전청약 당첨자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2024.04.23.(화)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3.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우선공급/잔여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시간 :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그 외 성남시 1년 미만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정당 당첨자)
2024.05.16(목) 10: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4.05.17(금) ~ 05.20(월) 10:00~17:00	2024.06.24(월) ~ 06.28(금) 10:00~16:00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www.엘리프성남신촌.com)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www.엘리프성남신촌.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 공고일(2021.10.15.)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엘리트 성남신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신생아 특별공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자녀가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통장사본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양육시설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정답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b>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b>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b>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li> </ul>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입금확인증 등) ※ 현장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가상계좌가 모두 상이하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③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④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엘리프 성남신촌' 홈페이지에 해당 서식 게시
	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⑥ 자격 검증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온라인 구매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포함)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우선/잔여)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선택사항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증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증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청자의 배우자 혼인신고일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3m	2.3m

**6. 지구 및 단지 여건**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광고홍보물은 실제 설계의 사실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확한 설계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방문 및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3-49호, 2023.01.26.)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 도로, 공공 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본 아파트 외 공공임대주택(A-1BL)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외 구조물(교량, 지상경사로 등),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동측으로 서울공항(단지 주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약 190m)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동측, 남측, 서측으로는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2m 도로가 개설될 예정에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본 사업지 서측으로는 공동주택 A-1BL(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할 예정이며, 북측에는 어린이공원 및 문화공원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동측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해당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남측으로는 단독주택지 및 주차장 용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으로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해당 공원 시설물 및 해당 시설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준주거지역 내 해당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 세대 및 저층 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으로 공동주택(A-1BL), 남측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공원에예정지(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현 시점 기준 본 단지와의 연결통로 설치는 미계획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단지의 모형 및 CG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해당 공원에예정지의 조성계획 변경 또는 사업여건 변경등에 따라 본 단지와의 연결통로 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인접동에 대하여서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자는 이에 따른 단지조성 변경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북측 문화공원 예정지 내 저류지(약 100m), 동측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약 120m) 및 강남구립행복 요양병원(약 180m), 북동측 유수지(약 140m), 서측 성남시수질복원센터(약 1.6km), 남서측 성남시폐기물종합처리장(약 1.6km)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의 유해시설 및 냄새유발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광고 홍보인쇄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VR, CG, 사진, 이미지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하여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관련사항

- 본 사업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은 성남 왕남초등학교, 서울 대왕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이 서울 대왕초등학교 또는 성남 왕남초등학교에 배치될 경우 중학교는 배치된 초등학교가 속한 관내 중학군 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성남교육지원청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단지별 동 표기 계획에 따라 본 아파트의 동번호 표기 및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조성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준공시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곽에 위치한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바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단지 북측의 201, 202, 205, 206동 인근에 공원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곽의 주변부 모형 및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계획 변경 및 착공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최종 확정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시설물, 포장 등), 단지 주출입구 조성 계획,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자연석 쌓기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안전난간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 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안전난간 등의 위치·높이,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 및 안전난간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로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택지 외부의 기존 저압관에서 분기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 택지 기반시설 착공 시 제반여건의 변동에 의해 정압시설 설치 요건으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정압시설의 설치를 위한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204동 전면 삼거리교차로 연접 공개공지 내)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통신관련(안테나) 시설은 본 단지 외부 및 주동 옥상(203동)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차후 전파방해 등 현장 실측 후 통신 사업자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 도로, 공원 등의 공사로 인하여 입주 이후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연접한 공원시설과의 연결통로는 미계획이며, 분양시점 이후의 공원부지 세부 시설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연접한 공원시설 조성 레벨에 따라 연접부의 경사로, 계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성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업관련 모형,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해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서울공항공이 인접하여 관계기관 및 주변여건 등에 따라 차량통제 및 소음이 발생하므로 주변상황 등을 잘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남북측·중앙부)으로 통경축 구간으로 생기는 공공 보행통로(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함)로 인해 단지 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체 배치 계획상 일부 세대가 바라보는 주향의 방향이 남동, 남서향을 벗어나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공공분양아파트(320세대)와 지상,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단지출입구 등의 시설물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차도(비상차량 진입도로 및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저층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1층 세대는 단지 내 보행부 바닥 레벨을 기준으로 세대 내 거실부 바닥 레벨이 약220mm 내외로 다소 낮게 올라온 바닥환경으로 건축될 예정이오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본인증)으로 인하여 분양 이후 단지계획 및 시설물 위치, 세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차량 주출입구는 1개소, 동별 출입구는 주동별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출입구의 경우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방향 및 형태(보도 경사로 포함)는 동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측(204-205동 사이)의 단지 외부출입계단과 외부도로(삼거리/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시설 계획은 형태 및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이동 동선 등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 현관문 개폐 시 복도 이동동선과 간섭이 발생하여, 이동상 주의를 요하며, 계약 전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바닥면에는 하향식피난구가 미설치되며, 201동, 206동 3층 일부 세대(필로티 상부 세대)에 한해서 침실1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인근의 지상주차장(일반주차1대+장애인주차1대)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의 주차시설로 우선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지상주차장 배치로 인하여 차량 소음 및 진동, 차량 라이트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승하차 동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충분히 모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B, C타입 일부 세대의 경우 침실2, 3 등의 방향이 북서향 또는 북동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E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C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좌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동측으로 어린이 놀이터, 북측으로 지구계획 기반시설인 공원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E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C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59C, 59D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후면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상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E, 59B세대 방향으로 주출입구 문주 계획이 있어, 해당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 방향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이 마련되어 있어 저층 세대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경로당이 계획되어 해당 시설부에 근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측 전면으로 실외기가 설치됨에 따라 59A타입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대기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교체작업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외기공간 건축구조물의 높이는 59A타입 세대 거실바닥면을 기준으로 500mm 내외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부에 지하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선크와 외부계단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북측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빛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서측 방향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에 의한 소음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동측 정원 공간(키움정원)이 조성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 방향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E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엘리베이터 홀 진입 시 59C세대 현관문과 보행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C세대 전면으로 자전거 보관소, 우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근접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서측 방향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서측 정원 공간(키움정원)이 조성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 방향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에 의한 소음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E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엘리베이터 홀 진입시 59C세대 현관문과 보행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북서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서측 정원 공간(키움정원)이 조성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6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서측으로 어린이 놀이터, 북측으로 지구계획 기반시설인 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동측 방향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 남서측 방향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보관소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가 위치한 59A타입은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이 마련되어 있어 저층 세대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에 계획된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과, 지하 선크를 통해 연결하는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등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 가족마당(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201동, 202동, 205동, 206동 주동이 인접하여 생활 소음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 모형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놀이터, 수경공간, 주민공동시설, 휴게정원,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인접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계획 상 외부도로에서 내부도로를 거쳐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으로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이동은 내부 램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지상(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문주,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를 중심으로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 회차 등을 위한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388대(근린생활시설: 2대 포함)로 공동 주차장으로 동별 분배가 아니며, 전기자동차 충전주차(급속 4대, 완속 16대)공간은 일부 동에 분산배치되며, 그에 따라 각 동별 이동 동선 및 개소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외벽 기단부 등은 석재 또는 도장-뿔칠 등으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며, 색채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 (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 및 도서 등)이 일부 설치되며(분양CG참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준공 시점의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 2층에 위치하며,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는 조정될 수 있고, 설치개소 제한으로 일부 입주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계절창고는 내부 및 외부조건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204동 인근)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주출입구에 설치되고,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 1층 주차장의 각 동별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되며, 공사 시 위치 및 개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설치됩니다.

- 주민카페는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설치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대기실로 겸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개방된 외부 창호의 방향에 의해 통학차량 등의 이동 등 직관적인 관찰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필로티 내부에 제연환풍 DA, 자전거치대, 설비배관 칸막이 벽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환풍의 정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건축구조물에 의하여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필로티 등 이동동선에 캐노피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공 중 위치변경,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주동 옥상과 203동, 204동, 206동 일부 측벽 및 시설물(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상부)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태양광 집광판을 통한 빛반사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위치 및 집열판의 규격/규모는 시공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고,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 창호사이즈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침실1(안방)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사용 시 침실1 내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점검 교체 주기 도래 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구간에서는 일정부분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제연용, 발전기실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일부 주동의 경우 세대근접 배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정원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카탈로그 등 홍보물 상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 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정원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주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해당 시설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인접동 저층세대 입주민께서는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문주 설치에 일부 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필로티 및 지상층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주동출입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시설물(분양CG참조)이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 내 추가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비품 등은 분양CG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수량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거나 맞닿은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단지와 외부 기반시설 사이의 경계 헨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전후면에 식재되는 조경시설(나무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주출입구 차량 통행으로 소음, 빛공해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로 인하여 주변 맨홀 등 막힘 발생으로 지하주차장 우수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주차장 도로 외 비상차량 이동 부분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일반 차량 운행 시 그로 인한 포장 등 파손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주택전시관,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내역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마감재 내역의 “금”은 동등 품질 이상의 유사 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다용도실,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 싱크대 하부(일부 배관 환경에 따름)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는 1, 2층과 최상층인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1층이 필로티일 경우 2층(단, 2층이 필로티일 경우 3층)에만 설치합니다.
- 세대통합관리함(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는 불박이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 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내부에 각종 빌트인 가전 설치에 따라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 도어 오픈 시 도어 손잡이 형태와 상부 스토퍼 설치로 인해 90도 오픈이 불가하며 손빨래 수전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보일러 점검 시 다용도실에 설치된 세탁기 종류에 따라 세탁기 이동 후 보일러 점검이 시행될 수 있으니 입주 전 충분한 확인 후 설치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유닛 및 배관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침실1(안방) 전면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내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침실1(안방)과 연결하여 에어컨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침실1(안방)에 전달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열 교환기 장치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등에 노출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덕트 파이프가 꺾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 침실1만 설치되고, 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매립연결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포함)는 건식공간으로 설계되어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사용한 물(화분 및 청소 등의) 배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홍통이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설치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이동 시 난간대 높이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형(냉장고 및 불박이장등) 이삿짐이 이동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침실1 발코니(실외기실)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의 출입문은 일반철재문으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전동식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골조 내 매립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제조사, 형태, 재질, 분할, 프레임/창짝 사이즈, 유리사양, 창호개폐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내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기구류, 콘센트, 도기구류 및 수전류, 스프링클러헤드, 우수드레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상·하부, 좌·우 확장세대 단열재 등 마감 설치로 천정 및 벽체 등 돌출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확장 또는 비확장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하부, 좌·우에 비확장 세대로 인하여 일부 단열재 등 마감 설치 시 벽체 또는 발코니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부욕실에 한하여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시공되며, 공용욕실에는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미설치되니, 주택전시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PL창호 모서리부분에 흰색이음선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물천장 깊이, 사이즈 변경,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커튼박스의 규격 및 깊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커튼박스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커튼박스 깊이, 사이즈 변경,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세대에 의하여 일부 비확장세대의 우·오수 드레인 및 벽체가 조정될 수 있으니 비확장 세대는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무선AP 및 방송스피커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필로티 캐노피 위치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본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공원, 도로망 등)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지하1, 2층 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지하 1층 주차장에 대하여서는 차량주행공간의 천장고는 2.7m로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사양 등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203동 저층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지붕형태 및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일부분 시야가 방해되는 차폐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바닥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경시설 및 식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 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 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발화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단지 내,외 보/차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옵션, 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반이, 천장몰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음)
- 주택전시관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로 공동주택과 별도 획지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 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현관, 홀 바닥 마감재 규격 및 재질 등은 시공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 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홀은 전 층에 환기창을 설치하고, 주동부(지상) 계단실은 5개 층마다 1개소씩 환기창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중 제반 사업여건에 따라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1층 출입구 인접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및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 현장 방문 및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여 충분히 입주단지 여건을 숙지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하며, 제반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토사(단지 하단 조경시설)에 접한 201동, 206동 아파트 계단실(승강기 및 홀 포함)은 내·외부 기온차로 인하여 결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 시 환기 등을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 203동, 204동 지하층 주변에 펌프실, 전기/발전기실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램프 인근 공유차량(카셰어링)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며, 정비관련 시설물은 미배치됩니다. 사용 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 차량통행차단기 설치 위치가 경사로에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차량 운행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등을 충분히 관람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펌프실 등 지하 관련시설 진입부에 위치한 주차구획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한 장비이동 시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 요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헬룸 등, 환기관련 시설에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 환기유닛 가동 시 차량으로 바람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행공간 천장 유효고는 지하 2층 2.3M, 지하 1층은 2.7M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택배배송 차량이 진입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나, 향후 부주의한 이용실태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숙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폭은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소폭 6m 이상의 주행 환경은 사전에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3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외부 선관을 이용하여 진입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단시간의 집중적인 우수유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일반주차 1대, 장애인주차 1대)를 계획하였으며, 해당 시설 이용환경 등은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의 숙지 미숙에 따른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녹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치수이며, 각 타입별 치수면적은 층수에 따른 벽두께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주택전시관(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ELIF 성남신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브랜드) 또는 지번 및 필지 동호수의 표기 등은 합필, 분할 또는 지번조정, 기타 등의 사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을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VR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19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개요: 성남신촌지구 A-2BL 공공주택 인증 개요: 인공번호: G-SEED-P-2023-0456-6 인증 기준: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인증 일자: 2023.04.26.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유효기간: 2023.04.26. -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유효기간까지 면적: 42,266.08㎡ 인증 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5) (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9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29% 에너지 및 환경오염: 68% 재료 및 자원: 55% 물순환관리: 26% 유지관리: 76% 생태환경: 39% 실내환경: 68%</p> <p>종합등급 ★☆☆☆</p> <p>2023년 04월 26일</p> <p>(사)한국 그린 빌딩 협회 회장</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성남신촌지구 A-2BL 공공주택 2. 신청자: 계원건설(주) 3.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A2BL 4. 성능등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방열방벽 차단성능</td><td>★★★★</td><td>20. 단열재의 부착성능</td><td>★★★★</td></tr> <tr><td>2. 방열방벽 차단성능</td><td>★★</td><td>21. 방열재의 부착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방열방벽 차단성능</td><td>★★</td><td>22. 방열재의 부착성능</td><td>★★</td></tr> <tr><td>4. 방열방벽 차단성능</td><td>★★★</td><td>23. 방열재의 부착성능</td><td>★★★</td></tr> <tr><td>5. 방열방벽 차단성능</td><td>★★</td><td>24. 방열재의 부착성능</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내충격성</td><td>★★</td></tr> <tr><td>3. 내충격성</td><td>★</td></tr> <tr><td>4. 내충격성</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공간의 지속가능성</td><td>★★★★</td></tr> <tr><td>3. 토양서식 생물 다양성</td><td>★★★★</td></tr> <tr><td>4. 새로운 건설방식 채택의 사용</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7.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8.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9.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10.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11.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12.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13.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14. 에너지 성능</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4월 26일</p> <p>(사)한국 그린 빌딩 협회 회장</p>	성능등급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방열방벽 차단성능	★★★★	20. 단열재의 부착성능	★★★★	2. 방열방벽 차단성능	★★	21. 방열재의 부착성능	★	3. 세대 간 방열방벽 차단성능	★★	22. 방열재의 부착성능	★★	4. 방열방벽 차단성능	★★★	23. 방열재의 부착성능	★★★	5. 방열방벽 차단성능	★★	24. 방열재의 부착성능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내충격성	★★	3. 내충격성	★	4. 내충격성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공간의 지속가능성	★★★★	3. 토양서식 생물 다양성	★★★★	4. 새로운 건설방식 채택의 사용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성능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성능	★★★★	9. 에너지 성능	★★★★	10. 에너지 성능	★★★★	11. 에너지 성능	★★★★	12. 에너지 성능	★★★★	13. 에너지 성능	★★★★	14. 에너지 성능	★★★★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개요: 성남신촌지구 A-2BL 공공주택 인증 개요: 인공번호: 22-주-에-14-0006 인증 일자: 2024.1.19 인증 기준: 한국건설에너지효율평가 인증 일자: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p> <p>위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에너지효율등급 (KWh/m<sup>2</sup>/년)</th><th>에너지효율등급 (KWh/m<sup>2</sup>/년)</th><th>에너지효율등급 (KWh/m<sup>2</sup>/년)</th><th>에너지효율등급 (KWh/m<sup>2</sup>/년)</th><th>에너지효율등급 (KWh/m<sup>2</sup>/년)</th></tr> <tr><td>난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냉방</td><td>41.7</td><td>79.8</td><td>58.6</td><td>16.2</td><td>16.2</td></tr> <tr><td>급탕</td><td>30.7</td><td>35.1</td><td>25.6</td><td>7.1</td><td>7.1</td></tr> <tr><td>조명</td><td>9.5</td><td>1.1</td><td>3.1</td><td>0.5</td><td>0.5</td></tr> <tr><td>합계</td><td>81.9</td><td>116.5</td><td>88.5</td><td>24.0</td><td>24.0</td></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2월 17일</p> <p>한국건설에너지효율평가협회</p>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난방	0.0	0.0	0.0	0.0	0.0	냉방	41.7	79.8	58.6	16.2	16.2	급탕	30.7	35.1	25.6	7.1	7.1	조명	9.5	1.1	3.1	0.5	0.5	합계	81.9	116.5	88.5	24.0	24.0				
성능등급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방열방벽 차단성능	★★★★	20. 단열재의 부착성능	★★★★																																																																																																		
2. 방열방벽 차단성능	★★	21. 방열재의 부착성능	★																																																																																																		
3. 세대 간 방열방벽 차단성능	★★	22. 방열재의 부착성능	★★																																																																																																		
4. 방열방벽 차단성능	★★★	23. 방열재의 부착성능	★★★																																																																																																		
5. 방열방벽 차단성능	★★	24. 방열재의 부착성능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내충격성	★★																																																																																																				
3. 내충격성	★																																																																																																				
4. 내충격성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공간의 지속가능성	★★★★																																																																																																				
3. 토양서식 생물 다양성	★★★★																																																																																																				
4. 새로운 건설방식 채택의 사용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성능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성능	★★★★																																																																																																				
9. 에너지 성능	★★★★																																																																																																				
10. 에너지 성능	★★★★																																																																																																				
11. 에너지 성능	★★★★																																																																																																				
12. 에너지 성능	★★★★																																																																																																				
13. 에너지 성능	★★★★																																																																																																				
14. 에너지 성능	★★★★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에너지효율등급 (KWh/m <sup>2</sup> /년)																																																																																																
난방	0.0	0.0	0.0	0.0	0.0																																																																																																
냉방	41.7	79.8	58.6	16.2	16.2																																																																																																
급탕	30.7	35.1	25.6	7.1	7.1																																																																																																
조명	9.5	1.1	3.1	0.5	0.5																																																																																																
합계	81.9	116.5	88.5	24.0	24.0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52,100,725
		기간이자	10,599,357
		필요적 경비	135,477
		그 밖의 비용	3,409,029
		<b>계</b>	<b>166,244,588</b>
건축비	공사비	토목	88,494
		토공사	-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30,287
		우·오수공사	61,685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30,405
		도로포장공사	169,508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0,447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432,624
		부대시설공사	1,205,041
		<b>계</b>	<b>4,228,491</b>
		건축	37,364,661
		공동가설공사	1,648,467
		가시설물공사	127,573
		지정 및 기초공사	138,304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13,731,264
		용접공사	-
		조적공사	1,069,274
		미장공사	1,323,255
		단열공사	1,685,469
		방수·방습공사	1,447,112
		목공사	2,002,280
		가구공사	1,352,554
		금속공사	810,235
		지붕 및 홀통공사	114,750
		창호공사	4,071,084
		유리공사	932,428
		타일공사	1,266,069
돌공사	2,247,078		
도장공사	1,108,976		
도배공사	585,731		
수장공사	770,473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932,285		
<b>계</b>	<b>37,364,661</b>		
기계설비	923,724		
급수설비공사	923,724		
급탕설비공사	592,015		
오배수설비공사	3,071,943		
위생기구설비공사	1,570,934		
난방설비공사	1,833,792		
가스설비공사	353,174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198,643		

구분		총액	
	그 밖의 공종	계	8,544,225
		전기설비공사	7,457,225
		정보통신공사	3,311,555
		소방설비공사	198,643
		승강기공사	1,114,090
	그 밖의 공사비	계	12,081,513
		일반관리비	2,409,504
		이윤	1,304,182
		계	3,713,686
		설계비	1,188,578
	간접비	감리비	449,018
		일반분양시설 경비	1,109,340
		분담금 및 부담금	123,260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2,095,420	
계		4,965,616	
그 밖의 비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9,149,120	
합계		246,291,9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대한감정평가법인
159,731,954,380원	158,225,049,150원	161,238,859,610원

1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기간이차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기타비용	계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사업승인부가조건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주차장 증고증가 추가비용
									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전청약소요비용	
14,853,492	11,131,150	366,494	3,213,574	142,274	9,608,152	1,130,603	1,088,416	1,084,577	2,259,627	922,452	420,631	1,318,294	908,253	103,959	112,324	259,016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11.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성남신촌 A2BL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이수건설(주) (206-81-40254) 동성건설(주) (308-81-04379) ㈜신흥디앤씨 (504-81-46827)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이수건설(주) (206-81-40254) 동성건설(주) (308-81-04379) ㈜신흥디앤씨 (504-81-46827)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토목/조경</li> <li>㈜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li> <li>■ 안전</li> <li>㈜솔빛엔지니어링</li> <li>■ 기계/소방</li> <li>㈜건창이엔이</li> <li>■ 전기/통신</li> <li>㈜베스텍파트너스</li> <li>■ 계약금액 : 4,437,000,000원</li> </ul>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12.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엘리프 성남신촌(A2블록) 주택전시관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위치안내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관람기간 : 2024.04.12.(금)~2024.04.14.(일), 3일간[10:00~17:00]
- ※ 상기 '관람기간' 및 당점차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합니다.
-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동천동 현대홈타운1차 맞은편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 지하철노선 : 신분당선 동천역 하차 후 3번 출구
  - 버스노선 : (광역버스) 6900 (마을버스) 11, 14-1, 14-4, 15, 16, 17 (동천역-배송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사이버 주택전시관 (PC · 모바일)

■ 주소 : [www.엘리프성남신촌.com](http://www.엘리프성남신촌.com)

분양문의

■ 엘리프 성남신촌 주택전시관 : 031-896-6600 (10:00 ~ 17:00)

